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C3블록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0.31.(금)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298-700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0.31.(금)	'25.11.10.(월)	'25.11.11.(화)	'25.11.12.(수)	'25.11.19.(수)	'25.11.21.(금)~ '25.11.29.(토)	'25.12.01.(월)~ '25.12.04.(목)

1

공통 유의사항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 등)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2022.09.30.)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본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31. 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의 거주기간(사전당첨자 모집공고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향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청약 청약자의 경우, '해당지역'은 수원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기타경기지역'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요건)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의 확인방법 : 청약홈 > 민간사전청약 > 당첨조회(당첨자발표일부터 10일간)
 -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9.30.)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5.11.19.)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당사의 분양상담전화(031-298-7001)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분양상담전화 및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유형은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세대주 요건	-	-	-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엘리프한신더휴스원.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3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주택이 위치한 '수원 당수 1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10.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5.04.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1.10.(월)	2025.11.11.(화)	2025.11.12.(수)	2025.11.19.(수)	2025.11.21.(금)~ 2025.11.29.(토)	2025.12.01.(월)~ 2025.12.0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5.11.1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 - 45042호(2025.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C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19층 10개동 총 452세대 중 사전청약 12세대, 본청약 440세대(특별공급 282세대, 일반공급 1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82세대(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4세대, 신혼부부 101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8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설계도서와 상이한 지질여건 매립폐기물 양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및 신설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화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서에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타입별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사전당첨자 배정세대수	본청약 배정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95	01	074.9504A	74A	74.9504	22.8548	97.8052	74.3157	172.1209	61.5439	96	96	6	90	8	2	28	2	17	57	33	10
	02	084.7762A	84A	84.7762	24.9677	109.7439	84.0583	193.8022	69.6121	77	77	3	74	6	10	15	2	14	47	27	6
	03	084.9195B	84B	84.9195	25.4805	110.4000	84.2004	194.6004	69.7298	158	178	1	177	18	22	36	6	34	116	61	12
			84B1	84.9195	25.4805	110.4000	84.2004	194.6004	69.7298	2											
			84B2	84.9195	25.4805	110.4000	84.2004	194.6004	69.7298	2											
			84B3	84.9195	25.4805	110.4000	84.2004	194.6004	69.7298	16											
	04	084.9866C	84C	84.9866	26.2948	111.2814	84.2669	195.5483	69.7849	36	36	1	35	3	4	8	1	6	22	13	2
	05	084.9621D	84D	84.9621	25.1635	110.1256	84.2426	194.3682	69.7648	42	63	1	62	6	6	14	2	12	40	22	4
			84D1	84.9621	25.1635	110.1256	84.2426	194.3682	69.7648	4											
			84D2	84.9621	25.1635	110.1256	84.2426	194.3682	69.7648	2											
			84D3	84.9621	25.1635	110.1256	84.2426	194.3682	69.7648	15											
	06	084.7004P	84P	84.7004	26.0671	110.7675	83.9831	194.7506	69.5499	2	2	-	2	-	-	-	-	-	-	2	-
	합계										452	12	440	41	44	101	13	83	282	158	34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실제 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은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아래 ‘주택형 표시 안내’의 신청기준 주택형(074.9200A, 084.9900A, 084.9900B, 084.9900C, 084.9900D, 084.9900E) 기준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약식표기된 개별 타입별 청약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사전청약/신청기준)	074.9200A	084.9900A	084.9900B	084.9900C	084.9900D	084.9900E
주택형(실제 전용면적기준)	074.9504A	084.7762A	084.9195B	084.9866C	084.9621D	084.7004P
약식표기	74A	84A	84B, 84B1, 84B2, 84B3	84C	84D, 84D1, 84D2, 84D3	84P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2022.09.30.) 승인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형 표기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 시 변경 전 주택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식표기된 “84P” 타입의 청약을 희망하시는 경우, 인터넷 청약 시 신청기준의 “084.9900E” 주택형을 선택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약식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2-25	2026-06-25	2026-10-26	2027-02-25	2027-06-25	2027-10-25	
74A	101, 102동 1, 2호 103동 1, 2, 3, 4호 110동 2, 3호	1F	6	309,049,033	342,950,967	652,000,000	32,600,000	32,6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2F	6	309,049,033	356,950,967	666,000,000	33,300,000	33,3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99,800,000
		3, 4F	20	309,049,033	371,950,967	681,000,000	34,050,000	34,05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5~9F	40	309,049,033	385,950,967	695,000,000	34,750,000	34,75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208,500,000
		10F 이상	24	309,049,033	399,950,967	709,000,000	35,450,000	35,45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212,700,000
84A	101, 102동 3호 104, 109동 2호 105, 107동 1호	1F	3	349,564,330	382,435,670	732,0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2F	3	349,564,330	398,435,670	748,0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3, 4F	12	349,564,330	414,435,670	764,000,000	38,200,000	38,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5~9F	27	349,564,330	430,435,670	780,000,000	39,000,000	39,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10F 이상	32	349,564,330	445,435,670	795,000,000	39,750,000	3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84B	101, 102동 4호 104동 1호 105, 107동 2호 106, 108동 2, 3호 110동 1, 4호	1F	10	350,155,373	363,844,627	714,000,000	35,700,000	35,7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2F	10	350,155,373	379,844,627	730,000,000	36,500,000	36,5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3, 4F	20	350,155,373	394,844,627	745,000,000	37,250,000	37,25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5~9F	50	350,155,373	410,844,627	761,000,000	38,050,000	3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0F 이상	68	350,155,373	425,844,627	776,000,000	38,800,000	3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84B1	104동 1호	4F	1	350,155,373	410,844,627	761,000,000	38,050,000	3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6F	1	350,155,373	425,844,627	776,000,000	38,800,000	3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84B2	104동 1호	3F	1	350,155,373	410,844,627	761,000,000	38,050,000	3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5F	1	350,155,373	425,844,627	776,000,000	38,800,000	3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84B3	109동 1호	1F	1	350,155,373	363,844,627	714,000,000	35,700,000	35,7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2F	1	350,155,373	379,844,627	730,000,000	36,500,000	36,5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3, 4F	2	350,155,373	394,844,627	745,000,000	37,250,000	37,25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5~9F	5	350,155,373	410,844,627	761,000,000	38,050,000	3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0F 이상	7	350,155,373	425,844,627	776,000,000	38,800,000	38,8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타입 (약식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5%)	2차(5%)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2-25	2026-06-25	2026-10-26	2027-02-25	2027-06-25	2027-10-25	
84C	106, 108동 4호	1F	2	350,432,063	346,567,937	697,000,000	34,850,000	34,85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209,100,000
		2F	2	350,432,063	362,567,937	713,000,000	35,650,000	35,65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3, 4F	4	350,432,063	377,567,937	728,000,000	36,400,000	36,4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218,400,000
		5~9F	10	350,432,063	392,567,937	743,000,000	37,150,000	37,15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22,900,000
		10F 이상	18	350,432,063	407,567,937	758,000,000	37,900,000	37,9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84D	105동 3호 106, 108동 1호	1F	1	350,331,129	381,668,871	732,0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2F	1	350,331,129	397,668,871	748,0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3, 4F	6	350,331,129	413,668,871	764,000,000	38,200,000	38,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5~9F	10	350,331,129	429,668,871	780,000,000	39,000,000	39,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10F 이상	24	350,331,129	444,668,871	795,000,000	39,750,000	3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84D1	105동 3호	5, 6, 9F	3	350,331,129	431,668,871	782,000,000	39,100,000	39,1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234,600,000
		10F	1	350,331,129	447,668,871	798,000,000	39,900,000	39,9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239,400,000
84D2	105동 3호	7, 8F	2	350,331,129	436,668,871	787,000,000	39,350,000	39,35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36,100,000
84D3	107동 3호	1F	1	350,331,129	381,668,871	732,000,000	36,600,000	36,6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2F	1	350,331,129	397,668,871	748,000,000	37,400,000	37,4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3, 4F	2	350,331,129	413,668,871	764,000,000	38,200,000	38,2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5~9F	5	350,331,129	429,668,871	780,000,000	39,000,000	39,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10F 이상	6	350,331,129	444,668,871	795,000,000	39,750,000	39,75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84P	106, 108동 2호	18, 19F	2	349,251,986	687,248,014	1,036,500,000	51,825,000	51,825,000	103,650,000	103,650,000	103,650,000	103,650,000	103,650,000	103,650,000	310,95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계약 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분양 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는 입주 당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일정 및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가산)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주택형(신청기준)			074.9200A	084.9900A	084.9900B	084.9900C	084.9900D	합 계
주택형(실제 전용면적 기준)			074.9504A	084.7762A	084.9195B	084.9866C	084.9621D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	1	3	1	1	7
		서울특별시	1	1	1	-	-	3
		인천광역시	1	1	1	-	-	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1	1	3	-	1	6
		장기복무제대군인	1	-	3	-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3	-	1	6
	중소기업근로자		1	-	3	1	1	6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1	1	1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50%)		1	5	11	2	3	22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5	11	2	3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28	15	36	8	14	10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6	1	2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17	14	34	6	12	83
합 계			57	47	116	22	40	28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해당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당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기관추천(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국외취업(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추천기관	구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8호, 제35조제1항제17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재대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8호,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8호,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거,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8호, 제35조제1항제23호에 의거,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9호에 의거한 자격요건 충족 및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단, 해당지역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가 낙첨되어 기타지역 거주자와 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미적용 ■ ②배점 <table><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점수</th></tr><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3명</td><td>35</td></tr><tr><td>2명</td><td>25</td></tr><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2명</td><td>10</td></tr><tr><td>1명</td><td>5</td></tr><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tr><td rowspan="3">해당 사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사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사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3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 10,087,437원	8,578,089원 ~ 12,009,323원	9,031,049원 ~ 12,643,467원	9,733,087원 ~ 13,626,320원	10,435,125원 ~ 14,609,174원	11,137,163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 11,528,499원	10,293,707원 ~ 13,724,941원	10,837,259원 ~ 14,449,677원	11,679,704원 ~ 15,572,938원	12,522,150원 ~ 16,696,198원	13,364,595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주택은 60㎡ 초과 주택형만 공급되므로, 단독세대 신청자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3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td><td>70%</td><td>3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3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19.(수) ~ 2025.11.28.(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1.1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11.21.(금) ~ 2025.11.29.(토) 9일간 10:00 ~ 16:00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건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0)	※ 해당 서류제출 일정 내 정당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개별 일정 구분은 별도 통보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31.)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별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단,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분)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1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연간 183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이 불가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세대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임신 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임신 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증빙서류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참조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건본주택 비치) 임신 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증빙서류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참조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분)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② 세무서 ③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③ 위촉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①,③,④ 해당 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 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증빙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제출서류	발급처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단독주택	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 제외 (해당자)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① 농지대장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정부24 / 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초지 (초지법 제2조1호)	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이음(eum.go.kr) / 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종중소유 토지 (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없는 경우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사전당첨자(계약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분)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1년 이내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연간 183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이 불가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공개 및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발급 경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발급 경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내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분)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 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 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2.01.(월) ~ 2025.12.04.(목)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건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113955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101홍길동")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 -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건본주택 비치)
	○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건본주택 비치)
	○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분)
	○		위임장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한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은 반환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해제 또는 해지가 될 수 있고,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 및 관계당국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 요건 해당자 제외)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및 위약벌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당첨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 또는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동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과소)납부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1억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 무(과소)납부 세액의 [3개월 이내 : 100퍼센트 가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퍼센트 가산], [6개월 초과 : 300퍼센트 가산]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사업 주체가 최초 입주개시일 전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납부(자동이체)하는 기준일까지입니다.
- 모집공고상 중도금 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의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 정책 및 금융권 사정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 및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 시, 법인, 재외동포, 외국인 명의 등으로 계약한 경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여 별도 자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서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사업 주체가 최초 입주개시일 전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납부(자동이체)하는 기준일까지이며 기준일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어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해당 은행 또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 정부대책 및 사업주체와 대출 금융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정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사전 방문점검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거한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당해 건설공사 진행에 연관된 각종 생산활동 및 업무 중단 등), 원자재 수급지연(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분양계약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 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 등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세대(전기, 수도, 난방 등)관리비 및 공동(일반)관리비 일체]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한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예정인 세대는 중도금 대출 상환 및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 전액 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확약서(사업주체 양식) 작성 및 관리사무소 세대 검침 후 공사 시작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 및 잔금납부 이전에는 불가능함)
- 아파트 사용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독단으로 견본주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여 견본품목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승인 하에 아파트 사용승인 전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세대에 관리비(세대관리비 및 공동·일반 관리비) 부과가 시작되며, 공사 진행 중 매일 세대 열쇠 반납 및 수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일을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하며,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골프연습장에 일반타석 4개소, 양손타석 1개소, 스크린골프 1개소, 퍼팅존이 설치 예정으로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 특화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실내놀이터 등)은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08대(공동주택 906대, 근린생활시설 2대)로 일반형 296대, 확장형 430대, 교통약자 30대, 장애인 36대, 경형 68대, 전기차 48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 등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 금(90%)
타입(약식표기)		계약시	입주지정일
74A	5,430,000	543,000	4,887,000
84A	5,720,000	572,000	5,148,000
84B	5,500,000	550,000	4,950,000
84B1	5,500,000	550,000	4,950,000
84B2	5,500,000	550,000	4,950,000
84B3	5,500,000	550,000	4,950,000
84C	3,850,000	385,000	3,465,000
84D	3,760,000	376,000	3,384,000
84D1	3,760,000	376,000	3,384,000
84D2	3,760,000	376,000	3,384,000
84D3	4,150,000	415,000	3,735,000
84P	7,420,000	742,000	6,678,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11397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고풍압 구조 검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선희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추후 전면창 설치 등 구조 변경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 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사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상,하부층 확장 세대일 경우 발코니를 통한 배수, 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배수, 우수배관 설치 위치는 확장형 세대기준으로 설치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건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약식표기)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실내기)	설치대수	공급금액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74A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710,000	571,000	5,139,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7,460,000	746,000	6,714,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790,000	679,000	6,111,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330,000	933,000	8,397,000
84A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290,000	629,000	5,661,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7,780,000	778,000	7,002,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500,000	750,000	6,750,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770,000	977,000	8,793,000
84B, 84B1, 84B2, 84B3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7,980,000	798,000	7,182,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950,000	695,000	6,255,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950,000	995,000	8,955,000
84C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130,000	613,000	5,517,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190,000	819,000	7,371,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350,000	735,000	6,615,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180,000	1,018,000	9,162,000
84D, 84D1, 84D2, 84D3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650,000	565,000	5,085,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7,580,000	758,000	6,822,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880,000	688,000	6,192,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570,000	957,000	8,613,000
84P	LG / 삼성	일반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440,000	644,000	5,796,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370,000	837,000	7,533,000
		고급형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640,000	764,000	6,876,000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330,000	1,033,000	9,297,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 및 삼성 제품으로 선택가능하며, 계약이후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전원,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전원은 실외기실에 제공)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침실1 공간 특화 선택 옵션에 따라서 옵션 선택/미선택 세대의 벽걸이형 벽체 매립배관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로 실외기 설치 시 상부 전열교환기의 유지보수 및 필터교환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엘지, 삼성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품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실내기 조합률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류는 제조사 사정에 따라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1) 타입별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항목	위치 / 아이템	품목명	공급금액			비고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74A	인테리어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070,000	107,000	963,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5,240,000	524,000	4,716,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520,000	152,000	1,368,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100,000	310,000	2,790,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② 광폭 강마루 (전실)	560,000	56,000	504,000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① 일반형 인덕션 (쿠헤)	8,060,000	806,000	7,254,000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닫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쿠헤업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8,910,000	891,000	8,019,000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분리함+2단서랍은 가스쿠헤업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헤업 설치 시와 상이함
		팬트리 수납강화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1,210,000	121,000	1,089,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침실3 일반 불박이장		1,250,000	125,000	1,125,000	- 미선택 시, 침실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압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6,070,000	607,000	5,463,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압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2,820,000	282,000	2,538,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이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920,000	92,000	828,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 오픈형 냉장고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됨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7,410,000	741,000	6,669,000	- 빌트인형 냉장고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크장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헤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가스쿠헤업 3구 설치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헤업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		2,890,000	289,000	2,601,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하향식 피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130,000	213,000	1,917,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방충망	

84A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260,000	126,000	1,134,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5,550,000	555,000	4,995,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550,000	355,000	3,195,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② 광폭 강마루 (전실)		620,000	62,000	558,000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 커튼 유리장식장 + 팬트리	① 일반형 인덕션 (쿠첸)	9,950,000	995,000	8,955,000	※ '팬트리 수납강화'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닫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쿠팅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커튼 유리장식장, 팬트리,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분리함+2단서랍은 가스쿠팅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팅 설치 시와 상이함 - 옵션 선택 시, 커튼 유리장식장은 (D3블록)106A 타입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공되며, 마감과 색상은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10,800,000	1,080,000	9,720,000		
	팬트리 수납강화		대형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2,080,000	208,000	1,872,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택1	①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2,900,000	290,000	2,610,000	- 미선택 시, 침실2/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② 침실3 일반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침실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6,080,000	608,000	5,472,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2,820,000	282,000	2,538,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이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920,000	92,000	828,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 오픈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책(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됨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7,380,000	738,000	6,642,000	- 빌트인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책(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커튼장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첸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가스쿠팅 3구 설치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팅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스룸		3,050,000	305,000	2,745,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거실좌우,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하향식 피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500,000	250,000	2,250,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방충망

84B, 84B1, 84B2, 84B3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6,150,000	615,000	5,535,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500,000	350,000	3,150,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② 광폭 강마루 (전실)		600,000	60,000	540,000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① 일반형 인덕션 (쿠첸)	7,950,000	795,000	7,155,000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단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8,800,000	880,000	7,920,000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분리함+2단서랍은 가스쿡탑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팬트리 수납강화	택1	① 대형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1,550,000	155,000	1,395,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②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 침실2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 가구도어)		2,300,000	230,000	2,070,000	- 팬트리 수납강화 옵션 선택 시, 대형 복도 팬트리 / 복도 팬트리 + 침실2 드레스룸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침실3 일반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침실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 84B1 / B2 / B3은 옵션 선택 시, 가구 위치가 84B와 상이함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5,500,000	550,000	4,95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3,500,000	350,000	3,150,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이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7,800,000	780,000	7,020,000	- 오픈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큰장 내부는 가구 선반으로 시공됨 - 빌트인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큰장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첸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가스쿡탑 3구 설치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84B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다용도실	3,000,000	300,000	2,700,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84B1,B2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1, 침실3-2, 주방/식당, 다용도실	3,380,000	338,000	3,042,000	
			84B3	다용도실	3,200,000	320,000	2,880,000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84B	거실좌,우,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500,000	250,000	2,250,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방충망
84B1,B2			거실좌,우,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2개소),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250,000	225,000	2,025,000		
84B3			거실좌,우,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2개소),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700,000	270,000	2,430,000		

84C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260,000	126,000	1,134,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6,780,000	678,000	6,102,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760,000	176,000	1,584,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470,000	347,000	3,123,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② 광폭 강마루 (전실)		630,000	63,000	567,000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① 일반형 인덕션 (쿠첸)	8,490,000	849,000	7,641,000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단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쿠틀업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9,300,000	930,000	8,370,000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분리함+2단서랍은 가스쿠틀업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틀업 설치 시와 상이함	
	팬트리 수납강화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1,870,000	187,000	1,683,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택1	①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2,680,000	268,000	2,412,000	- 미선택 시, 침실2/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② 침실3 일반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침실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압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3,990,000	399,000	3,591,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압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2,300,000	230,000	2,070,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리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7,340,000	734,000	6,606,000	- 오픈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됨 - 빌트인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친장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첸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가스쿠틀업 3구 설치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쿠틀업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거실1-1, 거실1-2,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주방/식당, 다용도실		3,340,000	334,000	3,006,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거실(2개소),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다용도실, 하향식파난구, 주방/식당(미세망)		2,400,000	240,000	2,160,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방충망

84D, 84D1, 84D2, 84D3	인테리어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480,000	148,000	1,332,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5,670,000	567,000	5,103,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380,000	338,000	3,042,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② 광폭 강마루 (전실)		580,000	58,000	522,000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 키큰 유리장식장 + 팬트리	① 일반형 인덕션 (쿠첸)	9,950,000	995,000	8,955,000	※ '팬트리 수납강화'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닫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키큰 유리장식장, 팬트리,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분리함+2단서랍은 가스쿡탑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 옵션 선택 시, 키큰 유리장식장은 (D3블록)106A 타입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공되며, 마감과 색상은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10,760,000	1,076,000	9,684,000	
		팬트리 수납강화		대형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1,890,000	189,000	1,701,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택1	①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2,680,000	268,000	2,412,000	- 미선택 시, 침실2/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② 침실3 일반 불박이장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침실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3,820,000	382,000	3,438,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2,270,000	227,000	2,043,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이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감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980,000	98,000	882,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 오픈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됨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감치냉장고) + 수납가구	7,440,000	744,000	6,696,000	- 빌트인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큰창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첸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 미선택 시, 가스쿡탑 3구 설치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84D	거실,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910,000	291,000	2,619,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84D1,D2	거실, 침실1-1(발코니), 침실1-2,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3,280,000	328,000	2,952,000		
			84D3		3,110,000	311,000	2,799,000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84D,D1,D2	거실좌,우, 침실1(발코니),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하향식피난구	1,940,000	194,000	1,746,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방충망 - 84D,D1,D2,D3은 주방/식당 창이 없으므로 미세망 미시공됨	
	84D3		거실좌,우, 침실1-1(발코니), 침실1-2,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하향식피난구	2,140,000	214,000	1,926,000			

84P	인테리어	현관 중문 (수동)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베이지, 브론즈 그레이 中 택1)	1,300,000	130,000	1,170,000	- 미선택 시, 중문 틀 미시공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현관 워크인장		시스템 가구 + 가구도어	1,260,000	126,000	1,134,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벽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시트판넬)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복도 벽 시트판넬	6,830,000	683,000	6,147,000	- 미선택 시, 거실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거실 조명 스타일업		우물천장 라인조명 + 실링팬(조명형) + 소파뒷벽 픽처레일	1,570,000	157,000	1,413,000	- 미선택 시, 우물천장과 기본 거실등 시공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 시, 기본형 거실 등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음	
		바닥 스타일업	택1	① 바닥타일(거실/복도/주방) + 광폭 강마루		3,390,000	339,000	3,051,000	-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 시공
				② 광폭 강마루 (전실)		630,000	63,000	567,000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
		주방 스타일업	택1	고급형 주방 디자인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 + 고급 싱크볼 + 수입수전 + 고급 액세서리 + 후라이팬 전용서랍장 + 음식물탈수기) + 주방 천장조명 + 아일랜드(상판 콘센트 포함) + 독립형 후드 + 인덕션	① 일반형 인덕션 (쿠첸)	7,220,000	722,000	6,498,000	- 미선택 시, 벽(타일마감(600x300)+상판(MMA), 기본 여단이장+침니형후드, 기본형 싱크볼, 일반수전, 기본형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며, 상판콘센트, 하부찬넬 조명, 상부장 조명, 음식물탈수기, 후라이팬 전용서랍장은 미시공 - 미선택 시, 주방 액세서리 미제공
					② 고급형 인덕션 (LG)	8,020,000	802,000	7,218,000	- 미선택 시, 아일랜드 가구가 미제공으로 수저보리함+2단서랍은 가스쿡탑 하부에 시공 - 미선택 시, 기본주방등, 기본식탁등이 설치되고, 아일랜드등은 미시공 - 옵션 선택 시, 선택한 주방 상판과 동일한 마감재로 주방 벽면 시공 - 옵션 선택 시, 밥통장 제공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팬트리 수납강화		복도 팬트리 (시스템가구 + 가구도어)	1,630,000	163,000	1,467,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침실 불박이장 (수납강화)		침실2 일반 불박이장 + 침실3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2,220,000	222,000	1,998,000	- 미선택 시, 침실2/3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드레스룸 특화	택1	①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 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5,350,000	535,000	4,815,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가구도어, 슬라이딩 도어는 미시공		
			② 일반형 드레스룸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입식 파우더) + 슬라이딩도어 + 천장조명	3,420,000	342,000	3,078,000	- 미선택 시, 침실1 동일 도배지+걸레받이로 마감 - 미선택 시, 기본 드레스룸등이 설치되며, 옵션등과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함		
	욕실 스타일업	공용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욕조 측면타일	4,600,000	460,000	4,140,000	- 미선택 시, 기본형 타일(600x300)과 기본형 수전, 액세서리, 세면대, 양변기, 욕조 및 MMA 젤다이로 시공		
		부부욕실	수입 벽(600x1200)/바닥타일(600x300) + 수입 수전/세면대 +고급 젤다이 + 수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액세서리 + 컬러샤워부스	3,700,000	370,000	3,330,000	- 미선택 시, 부부욕실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SUS로 시공됨		
가전 및 기타	냉장고/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택1	① 일반형 - 오픈형 (수납가구만 설치)	1,650,000	165,000	1,485,000	- 미선택 시, 빈 공간으로 시공되며, 거실 동일 도배지 + 걸레받이로 마감 - 오픈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큰장 내부는 가구 선반으로 시공됨		
			② 빌트인형 - LG (빌트인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수납가구	7,800,000	780,000	7,020,000	- 빌트인형 냉장고장 유상옵션 선택시 견본주택(빌트인형 냉장고장)에 설치된 마감재 및 색상으로 시공되며, 키큰장 내부는 5단 인출 시스템 선반으로 시공됨		
	인덕션 3구	택1	① 쿠첸 (일반형)	550,000	55,000	495,000	※ '주방 스타일업'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능		
			② LG (고급형)	1,400,000	140,000	1,260,000	- 미선택 시, 가스쿡탑 3구 설치 - 인덕션 설치 시, 상부 후드+상부장 높이가 기본형 가스쿡탑 설치 시와 상이함		
	제습기	택1	① 코스텔 (일반형)	1,100,000	110,000	990,000	- 설치위치 : 침실1 드레스룸		
			② 대우컴프레서 (고급형)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LG (가구판넬 마감)	1,500,000	150,000	1,350,000	-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가구도어로 마감됨 - 옵션금액은 기기값+가구판넬 마감 비용이 포함되어 산정됨		
	스마트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 미선택 시 고정압 환풍기 설치		
		부부욕실	힘펠	800,000	80,000	720,000			
	전동빨래건조대		웰테크	300,000	30,000	270,000	- 미선택 시, 기본마감(천장 : 도장) + 천장 조명 시공		
열차단필름		거실 침실1-1(발코니), 침실1-2, 침실2-1, 침실2-2, 침실3, 복도, 주방/식당, 다용도실	5,480,000	548,000	4,932,000	- 외기에 면한 창호 中 실내측 1면에 시공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거실좌우, 복도, 침실1-1(발코니), 침실1-2 침실2(2개소), 침실3, 다용도실, 주방/식당(미세망)	3,400,000	340,000	3,060,000	- 주방/식당만(미세망), 그 외 창은 안전창충망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전기, 통신설비 마감자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중 가구는 타입별로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 가구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시공상 문제 및 하자를 제외한 제품 자체의 하자 및 고장 등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아닌 본 제품의 최초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품의 A/S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최초 제조업체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에는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실외가스 또는 발코니에서 마감 가스쿡탑 사용이 불가하며, 필요시 계약자 별도 추가공사(가스배관 연장, 차단기 설치, 인허가 등 포함)가 필요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시 항목별 부분선택이 불가하며, 교차선택도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11398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예시 : 101동 101호 계약시 "101-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거실아트월 스타일업(세라믹타일) 옵션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시 와 선택시 경우에 따라서 현관 디딤판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설치시 설치되는 상하부 레일 및 측면 부자재 등은 제품 상호간 색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바닥타일 및 벽 스타일업 옵션(관련 옵션선택 시)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스타일업 미선택 시 기본형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일반 강마루 및 바닥스타일업 선택시 시공되는 광폭 강마루는 본 공사 시 제품의 제조사 및 규격, 모형, 색상,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바닥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 불가능합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선택 시 주방 스타일업 및 팬트리 수납강화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바닥 타일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범위 증감에 따른 비용이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선택 시 자기질타일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복도/주방 팬트리이며, 침실에는 광폭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부위에 세라믹 타일과 주방/거실 및 복도 부위에 시트알판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디자인 줄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조명 스타일업 및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조명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제품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 스타일업 및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거실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쇼파 뒷벽에 설치되는 픽처레일은 픽처 와이어가 제공되지 않으며, 커튼 또는 블라인드 설치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강마루, 자기질타일)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 벽, 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상판 콘센트는 본 공사시 제품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는 전기식(가스식 미설치)으로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발코니에서 주방까지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3구) 옵션 선택 시 해당 공급금액은 가스배관 및 자동식소화기(가스식) 미설치 감소비용과 인덕션 추가 증가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수납장, 드레스룸 특화, 주방팬트리 특화 등 옵션 선택 시 타입별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이 상이하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가구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마감재와 상관없이 옵션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외부 마감은 가구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문 옵션선택 시 지정된 색상 및 디자인만 선택 가능하오니,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옵션선택 시 하부 프레임이 노출 시공됩니다.
- 중문 옵션선택 시 바닥타일 현관 디딤판 마감 일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문 옵션선택 시 중문 프레임과 구성품 중 프로파일 컬러가 서로 상이하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중문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조명은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 조명과 조명 디자인 및 사양이 상이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트리 수납강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타입별/평형별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함으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시공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제품 및 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 마감 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레인샤워는 돌출형으로 변경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 옵션 선택 시 전동 빨래건조대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제습기는 작동시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천장형 제습기와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차단필름은 전체실 선택 시 외창 기준으로 시공되며(실내측1면시공), 침실(안방) 분합창 및 다용도실 내부창호 부분은 미시공되며, 타입별 시공위치 및 수량등은 상이하오니, 계약 체결전 설치위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1) 바닥재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타일, 강화석재>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욕실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물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쿠팅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천연석, 젤라이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를,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온도조절기	월패드, 도어폰, 각실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타입(약식표기)	74A	84A	84B	84B1	84B2	84B3	84C	84D	84D1	84D2	84D3	84P
기본선택 (금액)	32,447,000	36,060,000	36,047,000	37,938,000	37,938,000	36,001,000	36,288,000	35,076,000	35,911,000	35,911,000	38,052,000	36,121,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불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전기/통신마감자재 위치 등은 건본주택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건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38,051,800,000	06712025-101-0000400

■ 분양보증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인곡엔지니어링	㈜대경기술단
감리금액	2,268,516,800원	541,909,400원	98,958,851원	150,7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 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 원]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대항목		세분류		금 액									
택 지 비 (4)		택지공급가격		121,678,038								기계 설비 (9)		오수·배수설비공사	270,744								
		기간이자		15,254,953			용접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1,956,958								
		필요적 경비		6,345,775			조적공사		1,366,291					난방설비공사		2,431,948							
		그 밖의 비용		11,018,953			미장공사		1,148,476					가스설비공사		712,485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건 축 비 (23)				990,066	건 축 비 (58)		공 사 비 (51)		자동제어설비공사		104,498								
								방수·방습공사							1,188,079	그밖의 공종 (4)		특수설비공사	2,051,956				
								목공사							2,904,193			그밖의 공사비 (2)		전기설비공사	7,687,698		
								가구공사							3,630,241					간접비 (6)		정보통신공사	4,414,935
								금속공사							2,692,979							그 밖의 건축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211,214	기계설비(9)							
								창호공사							1,042,869			그 밖의 비용					
								유리공사					149,830	합 계						이윤	17,135,878		
								타일공사					990,066							그 밖의 비용		설계비	2,725,920
								돌공사					937,262			합 계						감리비	2,796,130
								도장공사					943,863					합 계				일반분양 시설경비	1,547,383
								도배공사					600,640	합 계								분담금 및 부담금	652,998
								수장공사					178,212							합 계		보상비	-
								주방용구공사			3,986,664	합 계				기타사업비성경비	19,790,665						
								그 밖의 건축공사			158,411					합 계		그 밖의 비용	25,318,110				
								급수설비공사			284,994			합 계				합 계	340,074,000				
								급탕설비공사			246,995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심사신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차액	조정사유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15,254,953,443	15,254,953,443	-	인정	
	제세공과금	6,345,775,230	6,345,775,230	-	인정	
	말뚝박기 공사비	13,130,527,638	9,322,674,623	-3,807,853,015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5,846,927,115	4,151,318,252	-1,695,608,863	조정	
	택지와 관련된 경비	1,696,278,174	1,696,278,174	-	인정	
	소 계(택지비 가산항목)	42,274,461,600	36,770,999,722	-5,503,461,878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2,710,161,523	1,979,859,667	-730,301,856	조정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5,640,230,000	4,342,977,100	-1297,252,900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1,696,870,000	1,306,589,900	-390,280,100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1,271,680,000	902,892,800	-368,787,200	조정
		기계환기설비	3,086,040,000	2,191,088,400	-894,951,600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4,186,894,380	4,186,894,380	-	인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5,508,254,544	5,508,254,544	-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930,350,000	660,548,500	-269,801,500	조정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410,520,000	311,995,200	-98,524,800	조정
		소방법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711,500,000	-	-711,500,000	불인정
		사전청약 추가비용	194,287,359	-	-194,287,359	불인정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4,095,000,000	-	-4,095,000,000	불인정
		법정초과조경설치비	688,789,840	-	-688,789,840	불인정
		커튼월록 특화공사	1,565,040,000	-	-1,565,040,000	불인정
		흡착,흡방습 친환경재료	4,467,581,289	3,171,982,715	-1,295,598,574	조정
		제로에너지(3등급) 추가비용	2,226,161,045	-	-2,226,161,045	불인정
	분양보증수수료		801,445,144	755,789,196	-45,655,948	조정
	소 계(건축비 가산항목)		40,190,805,124	25,318,872,402	-14,871,932,722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1. 의무사항 적용유무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난방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해당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속동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단지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등

*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각 항목별 등급 및 점수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예비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평가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및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 : 20250516-1141-0168</td> </tr> <tr> <td>준공연도 : 2027.11.15</td> <td>평가자 : 박주철</td> </tr> <tr> <td>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td> <td>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층 수 : 지상 19층 / 지하 2층</td> <td>윤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td> </tr> <tr> <td>연 면 적 : 86,024.6152 (㎡)</td> <td>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r> <td>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td> <td></td> </tr> <tr> <td>설계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td> <td></td> </tr> </tbody> </tabl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3 등급 □ 에너지 자립률(%) 합 계 : 62.88 % 대지 내 : 62.88 % 대지 외 : 0.00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kWh/㎡·년) : 40.2kWh/㎡·년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 (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th> <th>에너지 자립률</th> <th>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th> </tr> </thead> <tbody> <tr> <td>40.2kWh/㎡·년</td> <td>62.88 %</td> <td>ZEB Plus ZEB1 ZEB2 ZEB3 ZEB4 ZEB5</td> </tr> </tbody> </table>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모량</th> <th>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th> </tr> </thead> <tbody> <tr> <td>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td> <td>에너지 소모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td> </tr> <tr> <td>에너지 자립률</td> <td>1차 에너지 총 소모량 대비 1차 에너지 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td> </tr> </tbody> </table> ※ 상세한 인증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3) 등급으로 결정되어 이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250516-1141-0168	준공연도 : 2027.11.15	평가자 : 박주철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상 19층 / 지하 2층	윤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86,024.6152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40.2kWh/㎡·년	62.88 %	ZEB Plus ZEB1 ZEB2 ZEB3 ZEB4 ZEB5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모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소모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1차 에너지 총 소모량 대비 1차 에너지 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head> <tbody> <tr> <td>건 축 물 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 : G-SEED-P-2025-0481-5</td> </tr> <tr> <td>건 축 주 : 수원당수피에프이 주식회사</td> <td>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r> <tr> <td>준공 (예 정) 일 : 2027. 11. 15.</td> <td>유효기간 : 2025. 05. 27.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일</td> </tr> <tr> <td>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td> <td></td> </tr> <tr> <td>층 수 : 지하2층, 지상19층</td> <td>인증 등급</td> </tr> <tr> <td>연 면 적 : 86,024.6152㎡ (평가 연면적: 85,761.4027㎡)</td> <td>인증 등급 : 우수(그린2등급)</td> </tr> <tr> <td>건 축 용 용 도 : 공동주택</td> <td>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설 계 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td> <td>(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td> </tr> </tbody> </tabl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5년 05월 27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5-0481-5	건 축 주 : 수원당수피에프이 주식회사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 (예 정) 일 : 2027. 11. 15.	유효기간 : 2025. 05. 27.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		층 수 : 지하2층, 지상19층	인증 등급	연 면 적 : 86,024.6152㎡ (평가 연면적: 85,761.4027㎡)	인증 등급 : 우수(그린2등급)	건 축 용 용 도 : 공동주택	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 계 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수원당수피에프이 주식회사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 4. 성 능 등 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가. 소용 관련 등급</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생활주거용 공간성능</td> <td>★★</td> </tr> <tr> <td>2. 생활주거용 공간성능</td> <td>★★</td> </tr> <tr> <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 <td>★★</td> </tr> <tr> <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td> <td>★</td> </tr> <tr> <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 <td>★★★</td> </tr> </tbody> </table> 나. 구조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변성</td> <td>★★</td> </tr> <tr> <td>3. 수리유지성 전문부분</td> <td>★★</td> </tr> <tr> <td>4. 수리유지성 공률부분</td> <td>★★★</td> </tr> </tbody> </table>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r> <td>20. 연제된 녹지축 조성</td> <td>-</td> </tr> <tr> <td>21. 자연지반 녹지율</td> <td>★</td> </tr> <tr> <td>22. 생태면적률</td> <td>★★</td> </tr> <tr> <td>23. 생활시설공간(미모함) 조성</td> <td>★</td> </tr> <tr> <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 적용</td> <td>★★★</td> </tr> <tr> <td>25. 자연 환기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 <td>★★</td> </tr> </tbody> </table> 라. 생활 환경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자전거주자용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 <td>★★</td> </tr> <tr> <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6. 생활·유치시설 편의성 및 접근성</td> <td>★★★★</td> </tr> <tr> <td>7. 생활·유치시설 편의성</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td> <td>★</td> </tr> <tr> <td>13. 층대층벽 및 스타드룸</td> <td>★★★★</td> </tr> <tr> <td>14. 방범안전 관리</td> <td>★★★★</td> </tr> <tr> <td>15. 주차공간 추가 확보</td> <td>★★★★</td> </tr> </tbody> </table>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 <td>1. 화재 및 경보설비</td> <td>★</td> </tr> <tr> <td>2. 화재설비</td> <td>★</td> </tr> <tr> <td>3. 내화설비</td> <td>★</td> </tr> <tr> <td>4. 수리유지성</td> <td>★★★★</td> </tr> <tr> <td>5. 화재 및 경보설비</td> <td>★★★★</td> </tr> <tr> <td>6. 화재설비</td> <td>★★★★</td> </tr> </tbody> </tabl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5월 27일 한국부동산원장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공간성능	★★	2. 생활주거용 공간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유지성 전문부분	★★	4. 수리유지성 공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제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활시설공간(미모함)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자용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6. 생활·유치시설 편의성 및 접근성	★★★★	7. 생활·유치시설 편의성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	★	13. 층대층벽 및 스타드룸	★★★★	14. 방범안전 관리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경보설비	★	2. 화재설비	★	3. 내화설비	★	4. 수리유지성	★★★★	5. 화재 및 경보설비	★★★★	6. 화재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250516-1141-0168																																																																																																																																									
준공연도 : 2027.11.15	평가자 : 박주철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상 19층 / 지하 2층	윤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86,024.6152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자립률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40.2kWh/㎡·년	62.88 %	ZEB Plus ZEB1 ZEB2 ZEB3 ZEB4 ZEB5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모량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모량	에너지 소모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																																																																																																																																									
에너지 자립률	1차 에너지 총 소모량 대비 1차 에너지 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 수원당수1지구 C3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5-0481-5																																																																																																																																									
건 축 주 : 수원당수피에프이 주식회사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 (예 정) 일 : 2027. 11. 15.	유효기간 : 2025. 05. 27.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1지구 C3블록																																																																																																																																										
층 수 : 지하2층, 지상19층	인증 등급																																																																																																																																									
연 면 적 : 86,024.6152㎡ (평가 연면적: 85,761.4027㎡)	인증 등급 : 우수(그린2등급)																																																																																																																																									
건 축 용 용 도 : 공동주택	인증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 계 자 : (주)에안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7.01))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생활주거용 공간성능	★★																																																																																																																																									
2. 생활주거용 공간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역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유지성 전문부분	★★																																																																																																																																									
4. 수리유지성 공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제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활시설공간(미모함)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저감률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자용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6. 생활·유치시설 편의성 및 접근성	★★★★																																																																																																																																									
7. 생활·유치시설 편의성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	★																																																																																																																																									
13. 층대층벽 및 스타드룸	★★★★																																																																																																																																									
14. 방범안전 관리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경보설비	★																																																																																																																																									
2. 화재설비	★																																																																																																																																									
3. 내화설비	★																																																																																																																																									
4. 수리유지성	★★★★																																																																																																																																									
5. 화재 및 경보설비	★★★★																																																																																																																																									
6. 화재설비	★★★★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항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에 제시된 설치항목은 평가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및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 기준	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5-101-019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이름</td><td>수원당수퍼에프브이 주식회사</td></tr><tr><td>주소</td><td>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3층 마호(월평동)</td></tr><tr><td rowspan="2">건축물</td><td>이름</td><td>수원당수1 공동주택지구 C3BL</td></tr><tr><td>주소</td><td>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66</td></tr><tr><td rowspan="2">인증내용</td><td>구분</td><td>☒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td></tr><tr><td rowspan="2">인증등급</td><td>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td></tr><tr><td>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A ☒ AA ☐ A ☐ 준A</td></tr></table> 2025년 05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서울전파관리소장인	신청인	이름	수원당수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3층 마호(월평동)	건축물	이름	수원당수1 공동주택지구 C3BL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66	인증내용	구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A ☒ AA ☐ A ☐ 준A	항목	AA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Cat5e 4페어 이상	영상정보처리기	
		신청인	이름	수원당수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3층 마호(월평동)																		
	건축물	이름	수원당수1 공동주택지구 C3BL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66																		
	인증내용	구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A ☒ AA ☐ A ☐ 준A																				
	AA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가스밸브제어기																		
	AA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조명제어기																		
	AA	통신배관실(TPS)	난방제어기																		
	AA	단지서버실	주동현관통제기																		
	AA	예비전원장치	원격검침전송장치																		
	AA		침입감지기																		
	AA		차량통제기																		
AA		전자경비시스템																			
AA		무인택배시스템																			
AA		일괄소등제어																			
AA		디지털도어락																			
AA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AA		현관도어카메라																			
AA		주차위치인식시스템																			
AA		환기장치 제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명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적공부정리 등이 완료될 때까지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각종 파업(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원자재 수급 지연(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잔금 및 대납이자 완납 후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표등본 포함)을 사업주체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수인계된 이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예정인 세대는 중도금대출 상환, 분양대금 및 제반비용 전액 납부하고, 입주지원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확약서(사업주체 양식) 작성 관리사무소 세대 검침 후 공사시작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 및 잔금납부 이전에는 불가능함)
- 아파트 사용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독단적으로 견본주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여 견본품목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고발조치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불법 인테리어를 통한 폐자재 증가 및 주변 소음발생을 통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올바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
- 아파트 사용승인 전 불법적으로 세대 내 인테리어 사전 진행 시 해당 세대 해약 및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으신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받은 세대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고, 등기 전 전(월)세입자 전입 시 용자금 전액 회수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동, 부속동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부색채 및 마감재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및 사업주체 디자인 매뉴얼 변경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외부 환경 및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황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시설물 및 식재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규모 및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부지 외 조건 및 계획도로, 당수천 조성계획, 주변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 건본주택은 84B타입이 시공되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탑승위치, 속도, 인증, 용량)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또는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입주자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 실외기실 그릴창 등)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회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창호형태,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사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마감기구, 바닥배수구, 위생기구(수전, 도기류 등), 가스배관,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관계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통신마감기구의 수량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침실1 전면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조인트 부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 내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과 홍보안내를 위해 설치된 POP 및 홍보물 등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공사 건본주택 시공 기준을 우선으로 합니다. 단 현장 여건등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현장 여건 등에 이유로 실제 설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또는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일자과 개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은 서부1권역 내 유아배치시설(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유아배치가 가능합니다.
- 본 사업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수원가온초등학교입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도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 완료시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향후 지구 내 설립요인 발생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통학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는 호매실중학군(능실중, 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에 해당되며, 호매실중학군 내 2027.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수원제일중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중입니다.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 등)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학교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배치계획은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 진행상황, 학교시설 공사현황, 교육여건 및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배치 학교, 개교시기 및 학교 설립 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본 주택은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D3블락'과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나,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 등이 별도로 진행된 개별사업장으로서, D3블락과 단위세대 마감재, 공용부 마감재, 기타 자재, 공법 등 일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D3블락'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외부 인접 도로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4차/보완)'에 따라 저소음포장 등 소음저감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 시행은 택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주택 용지 내에 추가적인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소음저감시설로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일부 세대에서 미관, 조망, 통풍 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손해배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측벽 및 전면부),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파외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하여 사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통기배관으로 인한 냄새발생으로 생활환경 기타 사생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지상, 지하 일부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106동)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옥탑 또는 옥상 / 통신실 / 지하EPS실 / 각종 화단 또는 공터 / PIT(101,102,108동) / 헬룸실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관계법령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 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TOP 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기타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창호, 입면, 옥탑, 측벽, 물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돌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조경패턴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추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 및 법규 변경, 디자인 개선 등의 이유로 문주 설치 여부, 옥탑 조형물, 옥외시설물(조경, 조명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각 동 PIT 집수정 급배기구, 오수 및 폐기물 보관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상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침실 발코니의 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단지 지하주차장 외벽 및 최하층 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 구간에 배수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간층(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 동 외부 입면에는 태양광 집광판(BIPV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다리 등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 등 설비로 인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및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단지 지하주차장 외벽 및 최하층 바닥 일부를 제외한 전 구간에 배수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간층(지하 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사업주체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시 수전 높이, 가스계량기 등의 간섭으로 인해 이동 설치가 불가하여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및 세대내 환기배관으로 인해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배관의 경우 생활하자 방지를 위하여 저층과 고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며, 해당 배수배관 설치위치와 수량은 타입별·층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변동에 따라 세탁수전

및 발코니수전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침실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시설의 접이식사다리 덮개는 SUS재질 마감임.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에 위치한 공간의 경우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적치할 수 없으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완강기 설치 예외에 해당하여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하향식 피난시설 설치가 불가한 일부 세대에는 완강기 등 대체 피난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필로티 상부 세대 하향식피난구 실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부 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 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적용되어 제작·배포된 사업주체의 각종 로고 및 BI, CI 등의 이미지 디자인은 사업주체가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 및 조정시설물에 대해 시공상 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 상의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조정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사업주체의 조정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탈로그 및 CG, 견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 레벨, 대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 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해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램프, 조정석, 옹벽 및 플랜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의하여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및 관리업무를 인계받아야 하며, 관리 및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 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이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

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율(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벌칙 등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해제 또는 해지가 될 수 있고, 법령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을 공제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주택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6~19층 규모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 전동 지붕층과 103, 106, 108동을 제외한 옥탑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옥탑부 장식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식재는 상록낙엽 관목을 이용한 차폐 식재 예정이며, 외관은 석재 또는 지장 마감 예정입니다. 추후 사철나무철쭉류 다층식재 후 잔디로 조성될 수 있고, 출입계단은 화강석 통석, 외관은 화강석 판석 및 두겹석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성 및 규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매트 등의 계획에 따라 차폐가 안되는 구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요청 등의 민원이의제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차폐 식재 예정이고 화강석 마감 예정입니다. 단, 소방안전매트 등의 계획에 따라 차폐가 안되는 구간이 존재하고 추후 구성 및 규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1층 세대의 발코니 전면부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방법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단지 여건에 따라 형태 및 크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간은 공용면적으로 1층 세대 입주자의 사유면적 이 아닌바, 입주자는 해당 공간에 대하여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각 동 1층 세대의 입주자는 공간의 바닥재포장 등 용도변경 및 조경수의 추가식재,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세대는 이 공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식재, 출입계단 및 외관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업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유지·보수 책임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관리사무소 선정된 후 인수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습니다.
- 최상층 테라스의 경우 해당 세대 외 다른 세대는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공간으로 인해 아파트 옥상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입주민들은 위 내용에 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민원,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는 해당 입주자가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구분 소유들은 이에 동의하며, 최상층 세대의 입주자는 해당 테라스에 대하여 소유면적을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사용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사생활 등의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공간으로 통기관이 노출됩니다. 이로인해 냄새 유입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입주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에는 통기관, 가스배관, 에어컨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하부층 세대의 경우 상부층과 일부 평면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노출배관 또는 천장 매립배관이 추가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파라펫, 난간 설치 등에 따라 시야 및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옥탑구조물의 크기, 높이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난간은 철제 난간을 사용하므로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간의 위치, 재료, 재질 및 색상, 형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천장고는 본 공사 시 단열재 설치에 따른 마감 시공, 구조 관련 사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를 제외한(84P 대파공간 설치) 발코니(침실1 발코니)에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제공되므로, 이곳에 피난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적치할 수 없고, 그 사용 및 유지관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필로티의 천장과 및 통행관련은 주동 위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견본주택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의 천장고는 실시설계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최상층 테라스에 통기관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공간의 일부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피뢰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및 눈부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및 법규변경, 디자인 개선,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난방은 거실,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 및 전원이 설치됩니다. (단,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1에 냉매매립배관 및 전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 고려하여 건축계획 되었으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요청, 민원제기 등은 불가하며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 별 승강기는 층수에 따라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플랜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생활 또는 환경권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정확한 위치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불라드가 설치되어 상시 막혀있는 구조로 이동을 통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웬, 트레이, 부스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 계획에 따라 입주민과 방문객(상가 방문객 포함) 차량 동선이 일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교통약자, 장애인용 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충전등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조정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시 인허가청에 의해 방음벽 및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동측 방향은 도로에 접해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에 위치한 101, 108, 110동 저층부 세대 및 인근 세대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하여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이 발생하고, 사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코린골프,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은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설치됨에 따라 각 동별 이용거리는 상이하며,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인근에는 차량 진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생태온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소음,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부속동(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생태온실 등)의 지붕 파라펫의 높이, 위치, 재료, 재질, 색상 및 형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대지 일부가 지구단위지침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공공조경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보도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및 독서실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폐기물 보관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하고 해당 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침해 및 냄새,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상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 / 지하2층 2.3m(택배차량 진입불가)이며, 주출입구의 높이는 2.7m(통과유효높이)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차량, 대형 아산집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및 차로의 높이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분/구획되어 있으나, 출입구 및 차로, 통로 등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 대지에 물건의 적치, 시설물 적치, 영업등을 위한 대지의 사용 및 점용은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레벨 차이로 인해 경사가 일부 발생하며 계약 전 관련 도면, 모형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선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및 태양광 패널 설치 등에 따라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구조 안정성 확보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옥탑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등의 변경될 수 있으나,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지 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조망 침해 및 냄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에는 지하수등의 배출을 위한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펌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수 있으며, 전기세는 공용 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탐라이트, DA, 제연헬륨, 실외기실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모형도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 파라펫 실제 시공 시 구조 안정성 확보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위치한 세대의 경우 파라펫 높이에 의한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위치 및 디자인은 개인의 민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옥외 식재 및 시설물, 벽면 녹화, 옥상녹화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및 개인취향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헬륨실, 지하PIT 등에서 운영·관리로인한 기계 작동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텃밭은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동선에는 일반인의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부속동 외관색채, 외벽가감, 내부 공용부 마감은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색채 등 디자인 개선, 사업주체 디자인 메뉴얼 변경, 인허가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창호는 세탁/건조기 직렬 설치 시 창호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 배관 및 직배기 환기구 설치에 따라 외벽 커튼월 크기 및 위치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101동 입주 환경·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1동 지하층이 부대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1동 1층 계단 출입구 개방시 일부 세대 보행 통로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1동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7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서측으로 폐기물 보관소,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단지 출입구, 경비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어린이 통학차량 정차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벽면 녹화가 적용됩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2동 지하층이 부대시설(경로당, 그로잉에듀센터,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등)과 연접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2동 1층 계단 출입구 개방시 일부 세대 보행 통로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2동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서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동측부에 폐기물 보관소,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벽면 녹화가 적용됩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3동 지하1층에 부대시설(나눔장터, 주민카페, 취미공방, 용역원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3동 1층 계단 출입구 개방시 일부 세대 보행 통로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3동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서측으로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당수천변으로 보행로가 계획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벽면 녹화가 적용됩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4동 지하1층에 부대시설(런베이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4동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B타입은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서측으로 DA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B1, 84B2타입의 돌출발코니는 각 타입별로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당수천변으로 보행로가 계획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층 출입구 통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DA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D1, 84D2타입의 돌출발코니는 각 타입별로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동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폐기물 보관소와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입주 환경 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층 출입구 통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B, 84P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에는 청소·유지·관리용 고리 및 우수선홍통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 콘크리트 턱 및 난간은 높아·길아·위치·두께·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84D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로 보행 동선, DA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동측으로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커튼월록이 설치되어있으며, 커튼월록의 일부는 태양광집광판(BI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주동의 돌출발코니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우수선홍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커튼월록과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옥탑지붕층에는 공청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7동 입주 환경 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층 출입구 통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로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DA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동측으로 정원(센트럴필드)이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폐기물 보관소,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8동 입주 환경 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층 출입구 통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B, 84P타입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연결되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에는 청소·유지·관리용 고리 및 우수선홍통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 콘크리트 턱 및 난간은 높아·길아·위치·두께·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P타입 테라스 크기·위치·테라스 출입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소 불합리한 공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84D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로 보행 동선, DA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서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정원(센트럴필드)이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커튼월록이 설치되어있으며, 커튼월록의 일부는 태양광집광판(BI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주동의 돌출발코니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우수선홍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커튼월록과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동 입주 환경 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동측으로 폐기물 보관소,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DA,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0동 입주 환경 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층 출입구 통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스카이어커뮤니티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3·6·9·12층에는 비상문이 설치되어 피난구출활동 및 점검 시 사용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4층 스카이어커뮤니티가 설치됨에 따라 출입구 및 인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와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0동 1층에 면하여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74A, 84B타입 일부세대는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DA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면 중 일부부분에는 태양광집광판(BAPV)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시 친환경 본인증 진행에 따라 일부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녹지, 완충녹지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기·난방시설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공원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연결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인근 중심상업용지 예정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6동 인근에 어린이집이 설립될 예정으로 소음 및 사생활 제한, 기타 피해 등으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남측 : 폭 20.5m, 동측 : 20.5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공급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기타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당수천의 경계 레벨 및 세부 조정설계는 추후 실시설계 시 지반레벨(계획고)과 세부 조정계획(시설물)은 현장여건에 맞게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측 약 1.2km 반경 내에 송전탑, 단지 남서측 약 3.5km 반경 내 화성함백산 추모공원이 위치하여 세대 내에서 보일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수천 주변의 제1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계획 및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변공원 내의 산책로 및 조정계획(시설물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수천에 설치되는 목교는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목교로 시공 후 수원특례시에 시설물 기부체납 예정이며, 시설물 기부체납이 불가 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군 수원비행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7km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주변 여건(고속도로 2개소 및 연결도로)과 인근 맹꽁이 서식지 조성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가 군항공기의 운항경로에 포함되어 항공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디자인

1.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홍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온도조절기, 환기 조절기 및 디퓨저, 욕실헤파, 수전류, 도기류, 악세사리류, 바닥배수구 등)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단종, 제품 개선 등으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모든 전기/통신 마감재의 위치 제조사, 디자인, 기능, 재질, 수량은 본공사 시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별, 층별, 라인별로 주동(외관, 동출입구, 창호, 옥탑, 내부 공용홀, 세대방화문 등) 디자인의 형태, 색상, 마감재료, 사양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 시 자재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①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공사 시 강마루는 생산시기에 따라 마감재 색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 시 가구는 자체제작으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자의 편의 및 시공상의 이유로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가구 하드웨어의 사양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가구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② 붙박이장, 화장대, 신발장 등의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부, 하부,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4. 본공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노출된 장소(침실 벽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현장 여건상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7. 주방 하부장에 난방용 분배기 전용함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에 따라 하부장 오픈부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및 현관 바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세대 내부실 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2.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또는 PVC계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4. 옵션선택 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 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공용 홀의 창호는 1층과 최상층 및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26. 본 공사 시 욕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7.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8.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30.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하고, 전입, 전출, 이사 시 사다리차 진입 및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사 중 파손 시 원인자 원상복구, 하자보수 불가)
31. 발코니 사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32.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33.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과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5.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 외벽 및 전면 발코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7.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 크기, 개폐방식 등은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8.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트레이, 부스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39. 지하주차장에서 각동으로 출입 시 지하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0.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후 엘리베이터 홀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41.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침실 발코니의 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2.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4. 외부에 면한 발코니 출입 창호는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5. 건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46. 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7.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48.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건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결로현상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추가 설치되어 내부 설치수가 다소 줄어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0. 세대 내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욕조 및 샤워부스 공간 제외), 샤워부스 설치타입의 경우 욕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의 단차가 미미하여 욕실 내 신발 등이 출입문과 간섭될 수 있으며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부스 설치 타입의 건식구간은 평구배 구간으로 물 청소 시, 자연배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용상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욕실 천장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설치됩니다. 또한 건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84P와 최하층을 제외한 세대의 침실1 발코니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바닥에 설치되며, 세대의 침실1 발코니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3. 74A, 84A, 84B, 84B1, 84B2, 84B3, 84C, 84D, 84D1, 84D2, 84D3 세대 내에는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84P 세대 내에는 대피공간 설치)
54.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의 용이성을 위해 층별로 위치가 좌우로 교차되어 설치되며, 발코니 바닥 및 천장에 제품 마감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하부 세대로부터의 피난구 상부 덮개로 인한 소음 및 방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층 피난구를 임의로 막을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피난구 위치 및 크기 등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및 세대내 환기배관으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6. 전열교환 환기장비는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공간 상부에 노출되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7.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고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8. 거실 외부의 창호는 통창(철재난간) 시공될 예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입주자 동의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9.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0. 본공사 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62.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63.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된 수전류, 소방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발코니 수전 스프레이건용 밸브를 잠금 조치하여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 잠금으로 인한 동파 발생 시에는 입주자의 부주의로 간주 되어 보수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4.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 태양광 패널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 세대 내 마루 찌힘, 오염, 파손 등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루 보양지가 1겹 존치되어 있으며, 입주 시 계약자가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66. 세대 현관 방화문 및 실외기실 문 내/외부에 찌힘, 오염, 파손 등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양지가 존치되어 있으며, 입주 시 계약자가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67.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68. 세대 내 설치되는 라인조명 종류(리니어 조명, 간접조명 등)는 현장 여건상 분절 시공되며 이에 따른 접합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9. 본 공사 시에는 침실1 전면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조인트 부자재가 시공되지만, 건본주택 내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70. 세대 내에 설치되는 돌출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1. 세대 내에 설치되는 돌출발코니는 실내와 발코니 바닥간 단차가 발생하며, 물 들이침 등을 막기 위해 출입문 하부 턱이 계획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2.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3.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74. 세대 내 우물천장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물천장 깊이, 사이즈, 위치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5. 세대 내 커튼박스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커튼박스 깊이, 사이즈, 위치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6.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77.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옵션 해당시 설치되는 빨래건조대에는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78. 냉장고장 미설치 시, 가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전제품 사양에 따라 벽체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79.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 합니다.
80.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1.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3. 비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84.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85.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86. 무기질도료는 세대 내부 일부벽체에 시공 후 도배지 및 기타마감재가 시공되며, 입주 시 노출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타입별 시공위치 및 면적등은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7.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중량충격을 차단성능 성능등급은 표적실험등 등에서 관련기준 절차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을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사후확인제도, '22.8.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건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준용)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8. 같은 평형이라도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면적, 창호의 크기 및 유무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9. 주방 렌지후드 및 욕실 환풍기 배기는 세대 당 직접 배기 방식으로 배출되며, 그로 인하여 인접 세대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90. 세대 발코니와 하향식 피난구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와 연결 덕트는 유지관리를 위해 노출로 설치됩니다.
91. 세대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2. 세대 급수, 급탕, 난방 등 계량기는 공용부 PD 내부에 설치됩니다.
93. 단열차음 자재의 종류 및 사양은 품질기준 또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4. 벽지 도배 공법상 봉투바름으로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95. 세대 내 목문을 및 각종 물품 등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정용 타카핀 자국이 보일수 있습니다.
96.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산정된 예비인증 결과이며, 향후 본인증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7. 층간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보를 위해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1.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조감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전시품목

1.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간접등 등)는 연철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4.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 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및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색상, 마감자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7.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택지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공원 당수천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은 없습니다.
8.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9.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실제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상의 구획선, 부지고저차, 시설물의 형상, 외부입면계획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기타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판상형, 탑상형 구조 혼합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기타 환경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 및 장애인용 램프위치에 따라 동 환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의하여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휴게공간(데크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공원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야가 차폐될 수 있습니다.
15. 단지 내 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학교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실외기실, 헬룸실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로 인하여 조망이 차폐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저층부 세대에서는 지하층 기계설비 작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아파트 옥상 및 벽체에 설치된 커튼월록, 태양광집광판(BAPV, BIPV)으로 인해 일조량 및 반사광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부대시설의 화장실 배관 통기관 및 배기팬으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아파트 세대 하부 피트층의 경우 배수펌프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주동,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세대병호문, 내부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각 동별 층별 세대별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태양광 패널 등)의 위치, 크기, 수량,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물딩, 난간,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근생,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입면 형태 및 마감재료, 창호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정석 쌓기, 자연사면, 플랜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 등은 설계변경 등으로 위치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당사 외부 마감재 사양 등은 현장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타사 및 당사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4. 아파트 외부의 특화디자인(색채디자인 포함)은 주변환경의 변화, 디자인 트렌드 변화, 신소재 개발, 사업주체 디자인 매뉴얼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별도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견본주택 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15. 외벽에 특화 마감재(커튼월, 태양광 집광판) 및 물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바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분해되는 결속재료가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8.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재료 미제거로 인한 시공하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 대지 경계부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일부 단 차이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23.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는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24. 해당 사업지의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5. 본 단지의 B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및 상단부 벽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 단지의 옹벽 일부에 벽면녹화가 설치되며,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7. 단지 조경시설 내에 우수처리 재활용 급수 수전이 설치되며, 조경 급수 시설로 음용이 불가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의 입면, 재질, 창호디자인은 외부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주체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선정되고나서,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의 입주자 사용은 당 품목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8.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단지 커뮤니티 특화 및 상품성 개선을 위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실내놀이터 등)은 추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세부 계획 및 사양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여 시설

1. 공공기여 시설(그로잉에듀센터, 런베이스, 주민카페, 취미공방, 나눔장터, 스카이 라운지, 생태온실 등)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함께 이용하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체가 공간 구축, 운영 재원 지원 등 5년간 운영합니다.
3. 공공기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을 제공합니다.
4. 입주 초기부터 커뮤니티 전문 운영 기업에게 위탁하여 공공기여 시설 운영합니다.

■ 기타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대표사	구성원(1)	
상호	수원당수피에프비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주)	계룡건설산업(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월평동, 3층 301-마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계룡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계룡건설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60111-0707351	160111-0003121	160111-0003121

※ 본 사업의 사업주체인 수원당수피에프비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본 사업은 「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당수피에프비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당수피에프비 주식회사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엘리프한신더휴수원.com>

■ 분 양 문 의 : ☎ 031-298-7001

■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견본주택 및 현장 안내

견본주택	현장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20 • 운영시간 : 10:00 ~ 17:00	• 현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C3BL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